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메디톡스는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으로서 인권을 경영이념으로 세우고 경영활동에 따른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세계인권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 UN 아동권리협약(CRC,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of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등 국제 인권원칙을 존중하며 제시하는 인권 원칙을 지지함으로써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대상은 메디톡스의 모든 임직원으로 본사, 국내사업장, 국내외 법인 및 자회사에 적용한다. 또한 메디톡스의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도 본 정책을 존중하도록 권장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차별금지

메디톡스는 개인의 성별, 인종, 나이, 종교, 국적, 장애 등의 이유로 모든 차별행위는 금지하며, 채용, 승진, 교육, 평가 등의 경우 차별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인권

메디톡스는 임직원간 정신적, 물리적 폭력 등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직장 내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의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피해사실 접수 시 즉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한다.

③ 강제노동금지

메디톡스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금지하며, 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신분증, 여권 등 개인문서의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④ 아동노동금지

메디톡스는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며,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법적 최소 근로 연령을 준수한다.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법령을 준수한다.

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메디톡스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근로자가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활동하는 것을 존중한다. 또한 해당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⑥ 안전보건

메디톡스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법령 및 수칙 준수,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제거, 안전보건 목표설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안전보건 활동을 최우선으로 이행하여 고객, 협력사 근로자,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책은 2024년 6월 1일부터 제정 · 시행한다.